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아동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 신설(안 제5조의3)

- 1) 법 제10조제4항에서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달리 구성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3(특별위원회) 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3(특별위원회) 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둔다.</u> <u>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427